



의안번호

제139호

**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
폐지조례안**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9. 10. 14.

#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139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10. 14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폐지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개정에 따라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지사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려는 경우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으로,
-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 :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(2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) 예고기간 : 2019. 8.23. ~ 2019. 9.16.(24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□ 폐지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안 전 총 괄 과 장	박 기 연
	복 구 지 원 팀 장	조 정 구
	담 당 자	유 근 정 (746-6343)

[ 2006.11.14 조례 제541호 ]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 “검토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의 위촉 및 구성)**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논산시의 실·과·소장
2.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**제3조(위촉장의 교부)**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.

**제4조(위원장)**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.

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,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검토위원회 운영)**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.

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
2. 특정 단체·개인·법인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
3.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

**제7조 (기능)** 검토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2.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4.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

**제8조 (검토의견 제출)**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현지조사)**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협의의견 반영)**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
**제11조 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**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,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

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,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(회의록)**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,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개회·폐회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검토사항
4. 토의진행사항
5. 위원발언 내용
6.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간사)**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복구지원분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

③ 간사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
2.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
3.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
4.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

**제14조 (수당과 여비)** 검토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조례 제54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